

부산광역시체육회
관내 고등부 및 대학부 육성·지원 규정

부산광역시체육회 관내 고등부 및 대학부 육성·지원 규정

제정 2021.06.2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육성중인 운동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운동부(팀, 선수) 선정 및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육성중인 운동부 중, 전국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하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지원항목) 대상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훈련비, 등록금, 장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방법) 대상학교별 배정된 지원예산은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, 회기년도 내에 정산 조치토록 한다.

제5조(선정방법) 지원 대상학교 선정은 해당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선정한다.

제6조(지원기간) 지원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,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제정·운용 할 수 있으며,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·시행한다.

부 칙 (2021.06.2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